

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0. 03. 12.(목) <b>배포즉시(10시이후) 보도할 수 있습니다</b>	
<b>자치경찰단</b>	<b>보도자료</b> PRESS RELEASE	수사과	김경선 710-6523
		수사2팀장	진정일 710-8911
		담당자	고영호 710-8915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		후속자료 : 없음	

## 자치경찰, 대량의 '가짜 보건용 마스크' 전국 유통시킨 업자 철퇴

- 품귀현상 편승, 차익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정식허가된 보건용마스크로 위장 판매 -

### 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(단장 고창경)은

- 경기도 소재 ○○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고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한 A씨와 B씨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
- 유통업자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,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70,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,900원에 판매하여 1,7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,
- 유통업자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일반용 마스크 총 70,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,200원에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한 후 2,11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.
- 한편 도내 ○○마트 등 3개소에서도 B씨가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개당 2,800원 ~ 3,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중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※ 위반법률

- 약사법 제61조(판매 등의 금지) :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
※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(보도사유 : 동종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방지)

[유통업자에 의해 보건용으로 둔갑되어 유통된 마스크 사진]



[ 마스크 판매를 위한 불법 시험·검사성적서 등 부착사진 ]

